

# 2023년도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사업 운영 지침

2023. 5.



보 건 복 지 부  
의료인력정책과

## 1. 목적

이 지침은 전공의의 사기증진을 위해 단기 해외연수 등 지원을 통한 수련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단기연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,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재원

가. 대한병원협회에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금을 설치하고 국고와 전공의 수련병원의 매칭펀드로 지원금 재원을 마련한다.

- 국고보조금(일반회계) : 100백만원
- 수련병원 : 100백만원 범위내
- 지원금 국고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금과 수련병원의 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며,
  - 수도권 국고보조율 50%, 비수도권 또는 공공수련병원 국고보조율 80%, 중소 수련병원 국고보조율은 90%로 한다.

※ 비수도권 : 서울, 경기, 인천을 제외한 지역

공공병원 :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 중 국립대학병원,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수련병원

중소병원 : 500병상 미만 수련병원

## 3. 기본원칙

가.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를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금 지급기관으로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한다.

나. 대한병원협회는 전문과목 수련병원(기관)으로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추천 받아 지역별·설립구분별·규모별 및 전문과목별 전공의 비중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정책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

다. 대한병원협회 내에 지급대상 관련 전문가의 객관적인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투명하게 선정·지원하도록 한다.

- 선정위원회는 관련 전문가, 대한병원협회, 대한전공의협의회, 보건복지부로 구성

※ 단,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제도 운영 및 홍보 위주로 위원회에 참여

- 라.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대상기관의 단기연수 지원금 교부를 신청한다.
- 마.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의 단기연수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라 예산액을 교부한다.
- 바. 국고예산의 집행은 회계연도(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)내에 사용하여야 한다.
- 사. 대상자는 단기연수 종료 후 대상기관에 단기연수 지원금 정산 신청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.
- 아. 대상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 정산보고 및 전체 잔액 중 국고 해당 금액을 반납한다.
- 자. 대한병원협회 및 대상기관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이 지침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단기연수 지원 사업을 집행·관리하여야 한다.
- 차. 대한병원협회는 단기연수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 등의 관리비(인건비 제외)를 단기연수 지원금 교부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. (별도의 양식 없이 관리비 액수, 계산내역 등을 공문에 명기하여 신청)

#### 4. 지원 대상 및 기준 등

##### 가. 지원 대상

- 해당 전문과목 :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, 심장혈관흉부외과, 신경외과, 비뇨의학과, 병리과, 핵의학과, 가정의학과, 예방의학과, 결핵과 (12개 과목)
- 대상 기관 : 지원대상 전문과목을 지정받은 수련병원(기관)
- 신청 자격 : 지원대상 전문과목을 수련 중인 레지던트
- 지급인원 : 40명 내외(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)

##### 나. 지원 내용

- 1개월 이내의 해외연수 등을 위한 비용
  - ※ 승인받은 연수기간으로서 12월 말 까지 집행 완료되어야 함
- 왕복항공료(Economy Class 기준 실비) 및 체재비 및 국외 학술참가등록비 (실비)를 포함한 500만원 범위 내(국고와 대상기관 지원금 총액)

- \* 체재비 : 일비(현지 교통비 포함), 숙박비, 식비를 말하며, 모든 지원경비의 사용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(증빙자료가 없을시 일비(30\$), 식비(50\$) 정액 지급)
- \*\* 지원경비의 환율 적용일 : 대상기관에서 전공의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날로 '현찰 사일 때의 환율'
- \*\*\* 지원금을 초과한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대상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음

## 다. 선정기준

- 선정위원회는 전공의별 수련성적, 연수계획서, 가산점(논문실적, 선행·봉사활동·칭찬 사례 실적)<별지 5>, 수련병원 소재지, 설립형태, 규모, 전문과목별 전공의 비중을 비롯한 전공의 수련정책 방향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.
  - ※ 해당 단기연수에 참여했었던 전공의가 재지원할 경우에는 후순위로 심사
  -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등 정부 정책 방향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 관련 전문과목\*은 선정 시 각 과목 별로 전체 선정 인원의 10% 이상 우선 배정
    - \*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청소년과, 심장혈관흉부외과, 신경외과, 비뇨의학과
  - 비수도권·공공·중소 수련병원에서 추천하는 대상자는 선정과정 상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음
  - 심사 점수 미흡 등 부득이한 경우 해당 전문과목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- 다만, 동 지침을 위반한 병원이 신청한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## 라. 연수계획 변경 등에 따른 조치

-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연수 대상기관, 연수 기간 및 기타 사유로 연수를 포기한 경우 대상 수련병원은 대한병원협회에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  - 대한병원협회는 단기연수 포기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과목에서 차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함. 단, 특정병원 쏠림현상을 고려하여 다른 수련병원과 균등하게 선정할 수 있음
- 연수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후 연수 대상기관 및 연수 기간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 수련병원 등은 변경된 연수 계획서를 즉시 대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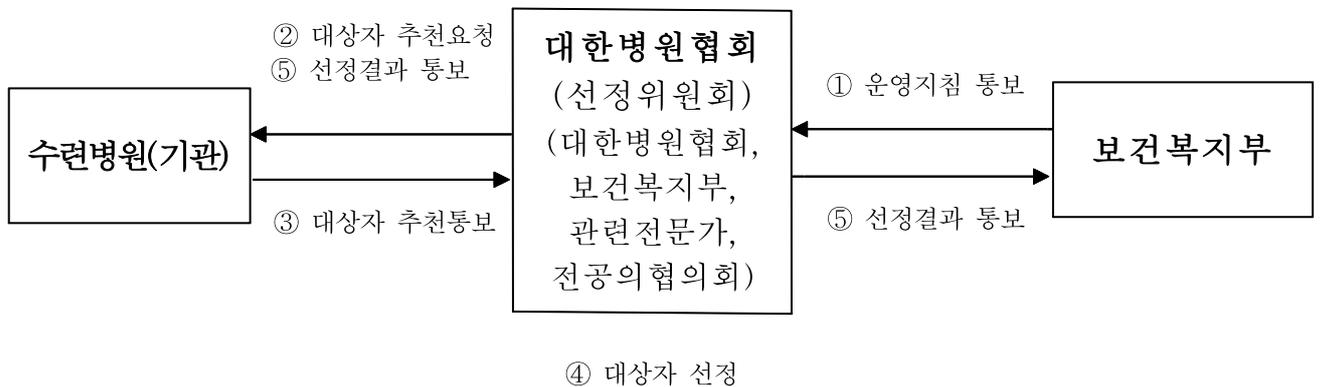
병원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대한병원협회는 변경된 연수계획서를 선정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의 검토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되, 불인정시 해당과목 내에서 차점 순으로 대상자를 재선정하고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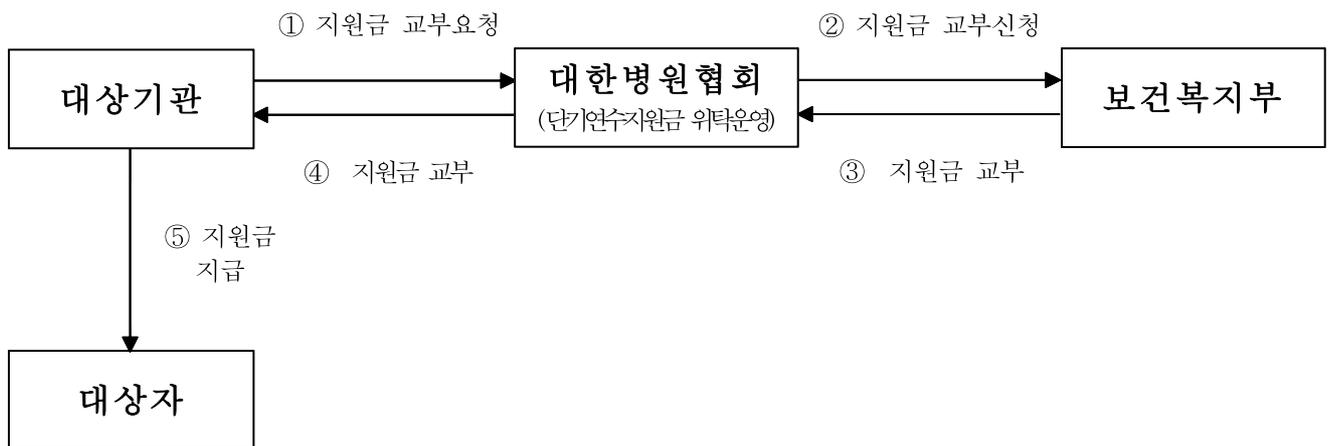
※ 연수기관 및 기간 변경 요청은 연수 시작일 15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가능

## 5. 시행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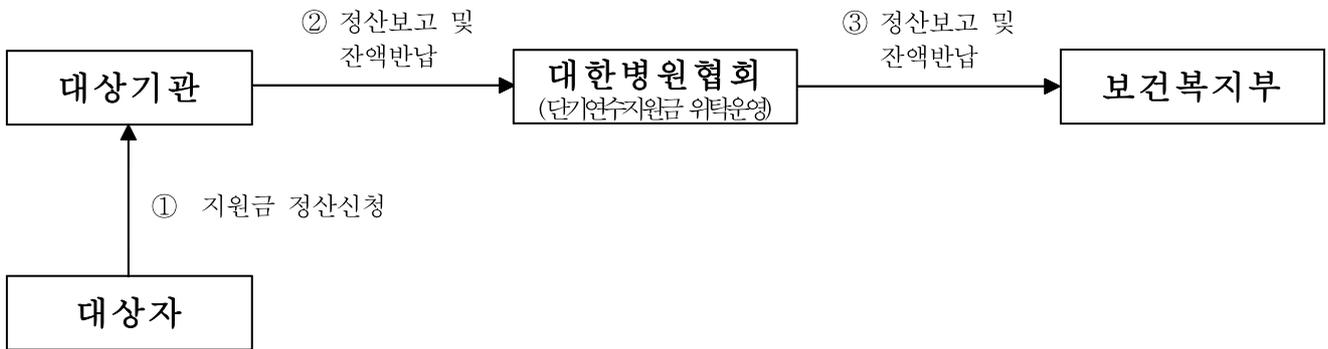
### 가. 단기연수 대상자 선정절차



### 나. 단기연수 지원금 지급 절차



## 다. 단기연수 지원금 정산 절차



## 6. 대상자 선정

### 가. 수련병원(기관)은 대한병원협회로 대상자 추천

- 전공의 단기연수 신청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
- 전공의 단기연수 계획서 1부(별지 제2호 서식)
- 전공의 소속 진료과장 추천서 1부(별지 제3호 서식)
- 단기연수 서약서 1부(별지 제4호 서식)

### 나. 대한병원협회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 선정

- 단기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1부(별지 제5호 서식)
- 단기연수 대상자 심사결과표 1부(별지 제6호 서식)
- 단기연수 대상자 명단 1부(별지 제7호 서식)

### 다. 대한병원협회는 수련병원(기관)으로 선정결과 통보

- 단기연수 대상자 명단 1부(별지 제7-1호 서식)

## 7. 대상기관의 지원금 신청 및 집행

### 가. 대상기관의 단기연수 지원금 교부요청

- 신청기간 : 단기연수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후 1주 이내
- 접수처 : 대한병원협회
- 구비서류
  - 단기연수 지원금 교부요청서 1부(별지 제8호 서식)
  - 전공의 재직증명서 1부(수련병원(기관) 양식)

## 나. 대한병원협회의 단기연수 지원금 교부신청

- 접수처 : 보건복지부(의료인력정책과)
- 구비서류
  - 단기연수 지원금 교부신청서 1부(별지 제9호 서식)

## 다. 대상기관은 단기연수 대상자에게 단기연수 지원금 지급

- 대상기관은 대한병원협회로부터 교부받은 국고 단기연수 지원금에 수도권 수련병원의 경우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금의 50%를, 비수도권·공공 수련병원은 20%, 중소수련병원은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대상자에게 지급

## 8. 회계관리 및 정산절차

### 가. 회계관리

- 대한병원협회 및 대상기관은 재원별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한다.
  - 국고 단기연수 지원금은 별도의 통장에 관리하여야 한다.
- 대한병원협회 및 대상기관은 성실히 그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대한병원협회 및 대상기관은 이 지침에 따라 지원금의 집행 실적(정산)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기타 지원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나. 단기연수 지원금 실적보고(정산)

- 대상자는 대상기관에 연수 종료 후 3주 이내에 단기연수 지원금 정산을 마쳐야 하며, 대상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 우선 지원금 집행 잔액을 보고하고, 바로 반납해야 한다. 대상자는 정산자료 및 각종 서류\* 제출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.

\* 왕복항공권 등 증빙자료

- 단기연수 결과보고서 1부(별지 제10호 서식)

- 대상기관은 아래와 같이 대한병원협회에 국고지원금 지급실적 보고(정산)를 시행하고, 이자 발생분을 포함한 집행잔액을 반납한다.

보고 시기	제출 서류
실적보고 및 정산 : 연수 종료 후 3주 이내	- 대상기관용 단기연수 지원금 지급실적 보고서 1부(별지 제11호 서식)

- 대한병원협회는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금 지급실적 보고를 시행하고, 재원별로 구분하여 이자 발생분을 포함한 집행잔액을 반납한다.

보고 시기	제출 서류
실적보고 및 정산 : '24. 2. 16.	- 대한병원협회용 단기연수 지원금 지급 실적 보고서 1부(별지 제12호 서식)

## 9. 행정사항

### 가. 단기연수 대상자의 복무관리

- 단기연수는 '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'에 지장이 없는 한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
- 대상기관은 근무상황 관리를 국외출장으로 처리한다.
- 단기연수 대상자의 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여행자 보험가입 비용은 대상기관에서 부담한다.

### 나.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에 따른 조치

-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.(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)
  - 대상기관 및 대한병원협회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
  -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때
  - 지원금 신청 시 허위신청 내역이 있는 경우
  -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교부를 받은 때
- 보건복지부장관은 대상기관이 단기연수 지원금 및 단기연수를 이유로 대상자의 기존보수를 삭감한 경우,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납토록 조치하며,
  - 해당 대상기관에 대한 수련병원실태조사 실시 등 관리·감독을 강화한다.

#### 다. 향후 추진일정

- 2023년도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운영지침 통보(복지부→병원협회) : 5월
- 단기연수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수련병원(기관) 대상 지원자 추천 안내(병협) : 5월
- 단기연수 대상자 내부선정 및 추천(수련병원→병원협회) : 5~6월
- 단기연수 대상자 선정 및 통보(병원협회→대상기관) : 6월
- 대상자 단기연수 : 7월~12월

<별지 1호>

## 전공의 단기연수 신청서

(수련병원(기관)용)

<b>1. 수련병원(기관)</b>				
수련병원(기관)명		대표자		담당자
소재지				
전화번호		FAX		
<b>2. 단기연수 신청</b>				
소 속	과(교실)	수련전문과목(년차)	( )	
성 명 (생년월일)	( )	연락처	사무실:	
			H·P:	
연수 세부 계획	국가명	기관명 (주 소)	( )	
	연수기간	20 년 월 일 부터 ( 일간) 20 년 월 일 까지		
	연수분야	(한글)	(영문)	
	연수목적			
	연수 후 기대효과			
<b>3. 단기연수 자격</b>				
수련성적	※ 전년도 수련성적			
선행·봉사활동·칭찬 사례·포상(공적) 실적	※ 현재까지 실적			
논문실적	※ 현재까지 실적			
<b>붙임 : 단기연수 자격 증빙자료 각 1부</b>				
20 년 월 일				
신청자(수련병원(기관) 대표자) (인)				
대한병원협회장 귀하				

<별지 2호>

# 전공의 단기연수 계획서

(단기연수 대상 전공의용)

수련병원(기관) 명 :

1. 단기연수 신청			
소 속	과(교실)	수련전문과목(년차)	( )
성 명		연락처	사무실: H·P:
연수 세부 계획	국가명	기관명 (주 소)	( )
	연수기간	20 년 월 일 부터 ( 일간) 20 년 월 일 까지	
	연수분야	(한글)	(영문)
	연수목적		
	연수 후 기대효과		
붙임 : 증빙자료 1부			
20 년 월 일			
신청자 (인)			
수련병원(기관) 대표자 귀하			

<별지 3호>

## 전공의 소속 진료과장 추천서

소           속 :           과(교실)  
수련전문과목 :           과(   년차)  
성           명 :

위 사람을 추천합니다.

20 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추천자 :   직급           성명           (인)

수련병원(기관) 대표자   귀하

<별지 4>

## 단기연수 서약서

소           속 :           과(교실)  
수련전문과목 :           과(   년차)  
성           명 :

위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전공의 단기연수를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여행기간 중 대한민국의 의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고, 국위선양과 대외관계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.
2. 본인은 연수 목적 이외의 행동과 국익에 위배되는 언동을 하지 아니한다.
3. 본인은 귀국시 분에 넘치는 휴대품을 과다 반입하지 아니한다.

20 년 월 일

서약자 :           (인)

수련병원(기관) 대표자 귀하

<별지 5>

## 단기연수 대상자 선정기준 (선정위원회용)

□ 수련병원(기관) 명 :

소속 :

성명 :

구분	평 가 항 목	배점	심사점수
수련성적	○ 총점, 평가등급, 평균점수	40	
연수계획서		60	
논문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논문(주 저자만 해당)</li> <li>- 원저</li> <li>- 증례</li> <li>○ 국내외 구연</li> </ul>	(최대 30점)  편당 10점 편당 5점 편당 5점	
선행·봉사활동·칭찬 사례 실적	○ 활동 건수, 포상(공적) 건수, 칭찬 사례 등	20	
합 계 (150점 만점)			
심사자 의 견			
총 점		심 사 자	(서명)









<별지 9호>

## 단기연수 지원금 교부신청서 (대한병원협회용)

(단위: 원)

대상기관명	수련전문과목 (년차)	성명	교부신청 내역		비고
			신청액	산출내역	
합계					
소계			5,000,000		
00병원 *예) 수도권	외과(3)		2,500,000	-항공운임 : -체재비 :	
	산부인과(2)		2,500,000	-항공운임 : -체재비 :	
소계			8,000,000		
00병원 *예)비수도권	외과(4)		4,000,000	-항공운임 : -체재비 :	
	산부인과(3)		4,000,000	-항공운임 : -체재비 :	
소계					
00병원 *예)중소병원	외과(4)		4,500,000	-항공운임 : -체재비 :	
	산부인과(3)		4,500,000	-항공운임 : -체재비 :	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위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금을 신청합니다.

20   년   월   일

대한병원협회장

(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

<별지 10호>

## 단기연수 결과보고서 (대상자용)

수련병원(기관) 명 :

(단위: 원)

<b>1. 단기연수 개요</b>			
소 속	과(교실)	수련전문과목(년차)	( )
성 명		연락처	
연수/프로그램명			
방문 국가명		기관명 (주 소)	( )
연수기간	당초	20 년 월 일 부터 ( 일간) 20 년 월 일 까지	
	실제	20 년 월 일 부터 ( 일간) 20 년 월 일 까지	
연수분야		(한글)	(영문)
연수/프로그램 과정 및 내용		(500자 내외로 작성)	
연수 목적 및 참여 사유		(500자 내외로 작성)	

	일시	내용
연수 일지 (예시)	(1월 1일)	(~을 위하여 □□측에서 개최한 ○○ 학술대회 참석)
	(1월 2일)	
	⋮	⋮
	(1월 30일)	
연수소감, 향후계획, 추가의견 등	(500자 내외로 작성)	
수집 자료 또는 책자 등	별첨으로 제출	







<별지 12호>

## 단기연수 지원금 지급실적 보고서 (대한병원협회용)

(단위 : 원)

대상기관명	수련전문 과목명	국고지원금 총 소요액			비고
		신청금액	집행금액	반납금액	
계					
00병원 *예) 수도권	외과	2,500,000	2,500,000	0	
	산부인과	2,500,000	2,000,000	500,000	
00병원 *예) 비수도권	외과	4,000,000	4,000,000	0	
	산부인과	4,000,000	3,600,000	400,000	
00병원 *예) 중소병원	외과	4,500,000	4,500,000	0	
	산부인과	4,500,000	4,000,000	500,000	

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따라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금을 위와 같이 지급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년          월          일

대한병원협회장 (인)

보건복지부장관 귀하